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5, No. 3, pp.25-31, August 31, 2019.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19.5.3.25
JCCT 2019-8-03

민고(民庫)에서 징수한 부가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urtax collected in Min-go

최학삼*

Hack-Sam Choi*

요 약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수많은 사회개혁책 중에서 세법의 부분은 바로 기본 전세 외에도 갖가지 명목으로 납부하게 되는 부가세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세법에 대한 개혁책 제시를 기초로 하여 조선시대 백성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각종 부가세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시 백성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에는 기본 전세 외에 지방재정기구였던 민고에서 징수한 각종 부가세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가세들을 연일현감 정만석이 올린 상소내용과 정약용의 전라도 강진 유배시절 조사한 조세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금산현 민고절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전세 외에도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던 민고의 폐단을 개혁하려는 다산 정약용의 참된 실학자다운 면모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경세유표, 부가세, 민고

Abstract This study Dasan Jeong Yak-yong, great writings, 「Mokminsimso」 and 「Kyoungseyupyo」 argued for reform of Dasan Jeong Yak-yong's tax law is a series of Surtax that have been included in or not in the law and have aggravated the tax burden on the people. Dasan Jeong Yak-yong's reform drive for the tax law did not end with a desk discussion, but went so far as to scrutinize the tax data in Gangjin, Jeolla-do, where he was in exile, and present various measures to abolish taxes and improve them in 「Mokminsimso」 and 「Kyoungseyupyo」. Based on the details of the tax laws for Dasan Jeong Yak-yong, 「Mokminsimso」 and 「Kyoungseyupyo」 this study reviewed the tax data and related prior research that Dasan Jeong Yak-yong investigated during his exile in Jeolla-do, The method of collection of various Surtax and the definition of tax amount and character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ere insufficient in the preceding study, was modified and supplemented. and further summarized various Surtax that were not mentioned in the preceding study. In addition, similar and opposite Surtax found in the review process of this study were compared in the text. also, various Surtax collected from the Min-go that increased the tax burden of the people at that time were summarized.

Key words : Dasan Jeong Yak-yong, Mokminsimso, Kyoungseyupyo, Surtax, Min-go

*정회원, 김해대학교 보건의료정보과
접수일: 2019년 5월 17일, 수정완료일: 2019년 6월 5일
게재확정일: 2019년 7월 13일

Received: May 17, 2019 / Revised: June 05, 2019
Accepted: July 13, 2019
*Corresponding Author: hschoi@gimhae.ac.kr
Dept. of 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Gimhae College Korea

Ⅰ. 서 론

조선 후기에 각 지방에서 전세(田稅) 이외의 잡역(雜役) 및 기타 관청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된 민고(民庫)라는 재정기구가 있었다. 보민고(補民庫)·대동고(大同庫)·고마고(雇馬庫) 등으로도 불렸던 민고는 원래 법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고 각 지방 고을의 관행에 따라 만들어졌으나 점차 지방고을 관청의 주요한 재정기구로 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 민고(民庫)라는 지방재정기구에서 징수한 각종 부가세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연일현감 정만석이 올린 민고폐단과 관련한 상소내용과 다산 정약용이 전라도 강진 유배시절 작성한 금산현 민고절목을 기초로 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던 민고의 폐단을 개혁하려는 다산 정약용의 참된 실학자다운 면모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될 것이다.

Ⅱ. 영남지방 민고에서 징수한 부가세

「목민심서」 호전(戶典) 6조 / 제5조 평부(平賦)- 상(上)을 살펴보면, '전부(田賦) 외에 가장 큰 부담은 민고(民庫)인데 혹은 토지에 부과하기도 하고, 혹은 가호(家戶)에 부과하기도 하여 비용이 날로 확대되므로 백성들이 살 수가 없다.'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민고의 폐단은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전들은 거기에 참여되지 않는다. 하나는 감사가 위엄을 함부로 부리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수령이 탐욕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다.

(중략)

감사의 복정(卜定) - 무릇 물산을 여러 고을에 책임지워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복정이라 한다. - 은 강제로 배정되지 않는 것이 없다.

배정한 숫자는 본래 적은데 물건을 받아들이기는 지나치게 많이 하고 매겨진 값은 본래 싼데 물건을 고르기는 너무 까다롭게 하므로 수령이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이것이 바로 민고가 생기게 된 동기이다.

예컨대 산읍(山邑)에서 꿀을 징수할 경우 처음 복정에서는 백청(白淸)은 5두에 불과하고, 황청(黃淸)은 1석에 불과한데 - 우리나라에서는 꿀을 청이라 한다. - 받아들일 때 가서는 백청 5두는 백청 10두가 아니고는 결코 납입할 수가 없고, - 두량(斗量)을 훨씬 넘게 받는 것이다. - 황청 1석은 백청 2석이 아니고는 도저히 납입할 수가 없다. - 물건 고르기를 까다롭게 하고 두량도 넘치게 받는다. -

(중략)

또 자기 어머니를 받들고 아내를 맞아오기 위하여 방을 수리하고 가마를 손질하는 것은 모두 자기 가정사에 속하는 일이거늘 오히려 백성들에게 책임을 지우니,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월름과 일봉은 단지 땅을 사고 집을 장만하며 권세에 아부하는 데만 쓴단 말인가. 미혹됨이 심하도다.

(중략)

"팔도에 모두 민고가 있지만 그 법식은 도(道)마다 각기 다르고 여러 고을에 모두 민고가 있지만 그 규례도 고을마다 각기 다르다. 그 법의 득실은 우선 그만두고라도 한 임금의 나라에는 마땅히 한 임금의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의 혼란함이 이와 같으니 천지가 생긴 이래로 이런 일이 있었던가."

위의 내용은 조선시대 지방재정기구였던 민고의 폐단을 다산 정약용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의 요지는 지방 고을의 관청에서 전부(田賦) 외에 중앙에 상납하거나 해당 관청에 필요한 각종 경비와 수령의 개인적인 경비까지 고을의 백성들에게 징수하여 그들의 조세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지할 점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읍징에 속하는 조세들이 거의 대부분 민고에서 징수된 조세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정만석(鄭晩錫)이 연일현감(延日縣監)으로 있을 때 이렇게 응지상소(應旨上疏)했다. 각 고을의 민고(民庫)에서 거두어들이는 것에는 소위 시탄가(柴炭價)·빙정가(氷丁價)·과실가(果實價)·면주가(綿紬價)·전관각가(傳關脚價)·조보가(朝報價) 등 각항(各項) 가미(價米)·첨가(添價)와 각영문 복정잡물 첨가(各營門卜定雜物添價) 각영문 정채(各營門情債)·경상납 정채(京上納情債)·각주인역가(各主人役價)·각사구청가(各司求請價)·전선개조첨가(戰船改造添價)·화세부족첨가(火稅不足添價)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세쇄한 명목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어서 71개 고을이 각기 다르니 혹은 결(結)

에 부과하기도 하고 혹은 호(戶)에 부과하기도 하며, 혹은 곡식으로 거두기도 하고 혹은 돈으로 거두기도 하며, 혹은 많이 거두기도 하고 혹은 적게 거두기도 하며, 혹은 거두기도 하고 안 거두기도 하는 등 본래 일정한 규례가 없습니다.

(중략)

이제 만약 각 고을의 민고절목(民庫節目)을 전부 적어서 그 거둬들이는 바를 계산하고 그 소요되는 바를 헤아려 그대로 둘 것은 그대로 두고 줄일 것은 줄이고 혁파할 것은 혁파하여, 결(結)과 호(戶)를 구분하고 그 수량을 책정하며 돈으로 거두든지 곡식으로 거두든지 편리한 대로 마련하고 또 각항 방하(放下)의 규례를 만든 다음 책자로 간행하여 각 고을에 비치시키기를 마치 「양역실총(良役實總)」의 경우처럼 하고 그것을 준수해서 감히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그 함부로 거둬들이고 간교하게 착취하는 폐단이 혹 없어질 것 같습니다 - 무오년 8월 28일 -"[1].

위의 내용은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 호전(戶典) 6조 / 제5조 평부(平賦)- 상(上)에서 전세(田稅) 외에 백성들이 각 지방의 민고(民庫)에 납부하는 각종 부가세의 종류 및 그 폐단에 대한 개선책을 언급한 연일현감 정만석의 응지상소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위의 내용에서 연일현감 정만석의 응지상소 내용이 무오년 8월 28일 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무오년은 1798년(정조 22년)이다. 연일현감 정만석이 정조의 자문에 응하여 상소를 올린 응지상소의 내용은 「정조실록」에서 정조 22년(1798년) 10월 12일에 기록되어 있다[2]. 그런데 이 응지상소의 내용에는 다산 정약용이 인용한 내용과 일치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연일현감 정만석의 응지상소 내용을 살펴보면, 상소에서 언급된 영남의 여섯 가지 폐단은 즉 역폐(役弊) · 부폐(賦弊) · 적폐(賦弊) · 해폐(海弊) · 산폐(山弊) · 삼폐(蔘弊)이다. 굳이 따져보자면 이 여섯 가지 폐단 중에서 다산 정약용이 인용한 연일현감 정만석 응지상소 내용 중 민고(民庫)의 폐단은 조세의 폐단을 말하는 부폐(賦弊) 부분에 연결되어져야 하는 내용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승정원일기」에서는 정조 22년(1798년) 10월 13일의 기사에 위의 내용과 같이 다산 정약용이 인용한 연일현감 정만석의 응지상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3].

본 연구에서는 다산 정약용이 정만석의 응지상소 내용 중에서 언급한 민고(民庫)에서 거두었던 각종 부가세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빙정가

얼음을 다루는 역군들의 품삯 명목으로 설정된 세목이다.

2. 과실가

각종 과일 등을 다루는 역군들의 품삯 명목으로 설정된 세목인 듯하다.

3. 면주가

솜〔綿〕과 명주〔紬〕 등을 다루는 역군들의 품삯 명목으로 설정된 세목인 듯하다.

4. 전관각가

지방 관아에서 감영에 공문서를 전달하는 사람의 다리 품삯의 명목으로 설정된 세목이다.

전관각가와 관련하여서는 본 연구의 앞 장에서 정리한 쇄렴에 해당하는 호방청전관미와 비교해 보면 될 것이다.

5. 조보가

조보, 즉 관보 발행의 비용 명목으로 설정한 세목이다.

6. 진상첨가미와 우첨가미

진상첨가미는 진상가미 명목으로 조세에 더 첨가된 세목으로 「경세유표」 권7, 지관수제 전제7에서는 진상하는 물건값에 첨가해서 받아내는 쌀로 정의하고 있다. 우첨가미는 진상가미에 다시 첨가되는 세목이다.

7. 각영문복정잡물첨가

감영, 병영, 수영에서 배정하는 잡물조로 조세에 더 첨가하는 세목이다.

8. 각영문정채와 경상납정채

각영문정채는 감영, 병영, 수영에 인정조로 바치는 돈이고, 경상납정채는 중앙에 상납할 때 인정조로 바치는 돈이다.

9. 각주인역가

경주인(京主人), 영주인(營主人), 병영주인(兵營主人) 등의 역(役)에 대한 보수이다.

가. 경주인역가미

경주인의 역(役)에 대한 보수이다. 경주인은 아전이나 서민으로 서울에 있으면서 그 지방 관청의 사무를 연락 또는 대행해 보던 사람인데, 경저리(京邸吏)라고도 한다.

나. 영주인역가미

감영주인의 역에 대한 보수이다.

다. 병영주인역가미

병영주인의 역에 대한 보수이다. 병영주인은 병영(兵營)에 딸린 이속으로 각 고을 관청과의 사무 연락을 맡아 보았다. 이상과 같은 경주인역가미, 영주인역가미, 병영주인역가미는 앞에서도 정리되어 있다.

10. 각사구청가

서울 각 관아의 요구나 청탁에 따르는 것이다.

11. 전선개조첨가

전선을 개조한다는 명목으로 조세에 첨가하는 세목이다.

12. 화세부족첨가

화전세(火田稅)의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에 첨가되는 세목이다[1].

본 장에서는 이상과 같이 영남지방 민고(民庫)에서 징수한 각종 부가세들을 「목민심서」 호전(戶典) 6조 / 제5조 평부(平賦)- 상 부분에서 다산 정약용이 인용한 연일현감 정만석이 올렸다는 응지상소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검토해 보았다. 위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세액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영남의 71개 각 고을 민고에서 갖가지 많고 많은 부가세들을 토지 또는 가호에 부과 및 징수하여 백성들이 그 부담 때문에 제대로 살 수가 없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표 1은 본 장에서 검토되어진 영남지방 민고(民庫)에서 징수한 각종 부가세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영남지방 민고(民庫)에서 징수한 각종 부가세

Table 1. Various Surtax collected in Min-go of Youngnam region

조세명	성격
빙정가	얼음을 다루는 역군들의 품삯 명목으로 설정된 세목
과실가	각종 과일 등을 다루는 역군들의 품삯 명목으로 설정된 세목
면주가	솜(綿)과 명주(紬) 등을 다루는 역군들의 품삯 명목으로 설정된 세목
전관곽가	지방 관아에서 감영에 공문서를 전달하는 사람의 다리 품삯의 명목으로 설정된 세목
조보가	조보, 즉 관보 발행의 비용 명목으로 설정한 세목
각영문복정 잡물첨가	감영, 병영, 수영에서 배정하는 잡물조로 조세에 더 첨가하는 세목
각영문정채	감영, 병영, 수영에 인정조로 바치는 돈
경상납정채	중앙에 상납할 때 인정조로 바치는 돈
각주인역가	경주인(京主人), 영주인(營主人), 병영주인(兵營主人) 등의 역(役)에 대한 보수
각사구청가	서울 각 관아의 요구나 청탁에 따르는 것
전선개조첨가	전선을 개조한다는 명목으로 조세에 첨가하는 세목
화세부족첨가	화전세(火田稅)의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에 첨가되는 세목

III. 금산현 민고절목

정약용은 민고의 폐단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실제로 「목민심서」 호전(戶典) 6조 / 제5조 평부(平賦)- 상(上) -에서 다음과 같은 금산현 민고절목을 만들어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교묘하게 명목을 세워 수령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없앨 것이며, 여러 종목 중에서 과도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진 것은 삭제해서 백성의 부담을 가볍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내가 우연히 몇 고을의 절목을 얻어서 보았더니, 그

중 과도하거나 허위로 만들어진 명목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포진가(鋪陳價) 300냥은 필시 다 쓰이지 못할 것이요, 쌍교가(雙轎價) 200냥도 필시 다 쓰이지 못할 것이요, 분양마가(分養馬價) 150냥도 필시 다 쓰이지 못할 것이요, 전관가(傳關價) 1200냥도 필시 다 쓰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따위들을 어찌 다 손꼽을 수 있겠는가. 옛날에 탐관이 한번 함부로 징수한 일이 있으면, 그 후 부임하는 수령들이 이를 구례(舊例)라 핑계하고 다시 삭제하지 않아서 이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중에 아전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은 아전이 탐관을 만나 은밀히 뇌물을 가지고 꾀어서 역가(役價)를 늘려 영구한 이익을 삼은 것이니, 이를테면 전관가전(傳關價錢) 1200냥의 따위가 그것이다. 순영(巡營)에 올리는 문보(文報)가 아무리 자주 있다 하더라도 한 달에 사람을 보내는 횟수가 5~6차에 불과할 뿐인데, 어떻게 꼭 매달 100냥씩이나 소비한단 말인가. 애초에 역가를 증액시킬 때 뇌물을 바쳤음이 분명하다.

(중략)

대개 민고의 법은 비록 모두 지출을 헤아려서 수입을 정한다고 하지만, 그 절목의 양식은 반드시 먼저 수입을 기록하고 뒤에 지출을 기록하는 것이 마땅하다. 미곡으로 결렴(結斂)을 하거나 돈으로 호렴(戶斂)을 하거나 마땅히 여러 종류를 조목별로 나열하여 그 총수량을 기록한 연후에 응하(應下)와 별하(別下)의 여러 명목을 나열해서 그 지출할 액수를 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제 몇 고을의 절목을 보니, 그 수입과 지출이 뒤섞여 어지럽게 되어 있어서 세입(歲入)에 이미 일정한 기준이 없고 일용(日用)에 또 일정한 법식이 없으므로 비록 예수(隷首)로 하여금 계산을 하게 하더라도 그 농간을 살필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절목의 초안을 만들어 그 법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금산현(琴山縣)의 민고절목(民庫節目)

1년 응입전미(應入錢米)의 액수

쌀 200석- 즉 3000두 - : 본현(本縣)의 전총(田總) 6000결(結)에서 수입한 것.

매결에서 각각 쌀 5승씩을 징수하되 흉년에 재감(災減)이 있어 6000결이 되지 못할 경우는 은결(隱結)을 조사하여 몇 석(石)씩 더 징수해서 200석의 세입 액수는 매년 줄어들지 않게 한다. - 혹 궁방무토전(宮房無土田)에서 거둔 세에 남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은결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 -

돈 1200냥 : 본현의 6천 결에서 수입한 것.

매 결에서 각각 돈 2전(錢)을 징수하되, 흉년에 더 징수하는 것은 위의 방법과 같이 한다.

돈 1000냥 : 본현의 호총 4000호에서 수입한 것.

매호에서 각각 돈 2전 5푼씩을 징수한다. 그러나 호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서 일정치 않다. 먼저 호적을 바로잡아 허호(虛戶)와 실호(實戶)를 조정해서 각 동리의 호가 몇 호이건 모두 실호가 되게 한 뒤에 그 호수를 계산해서 이전(里錢)을 배정한다. 비록 후일에 호수의 증감이 있더라도 이 돈의 액수는 증감이 없어야 한다. - 가령 유천리(柳川里)가 지금 10호라면 그 이전은 2냥 5전으로 책정하여 후일에 혹 줄어서 9호가 되거나 혹 늘어서 12호가 되더라도 2냥 5전만은 증감이 없게 한다. -

이상의 세입은 매년 축나는 일이 없다. - 쌀의 경우는 모두 3월 달 안에 차하〔上下〕하고, 돈의 경우는 결(結)에서 거두는 것은 봄에 거두되 3월 달 안에 차하하고, 이(里)에서 거두는 것은 가을에 거두되 9월 달 안에 차하한다. -

매년 응하질(應下秩)

쌀 80석 : 순영주인(巡營主人)의 역가미(役價米).
쌀 20석 : 병영주인(兵營主人)의 역가미.
쌀 4석 : 춘・추석전(春秋釋奠)의 대제(大祭) 때 쓰이는 양성(羊腥)・시성(豕腥)의 첨가조(添價條).
- 춘추로 각 2석 -

쌀 60석 : 현사(縣司)의 시탄가 첨급(柴炭價添給).
쌀 30석 : 진상하는 절선(節扇). 물종가(物種價).

쌀 2석 : 본고 감관(本庫監官)의 1년 요미(料米).

쌀 4석 : 본고 색리(色吏)・고자(庫子)의 1년 요미. - 고리(庫吏)는 민고의 돈을 취해서 여러 방도로 요리하여 스스로 큰 장사꾼이 되므로 급료가 본래 박한 것이다. -

이상은 쌀 200석의 용도이다.

돈 100냥 : 경주인(京主人)의 역가(役價).

돈 400냥 : 순영주인(巡營主人)의 진상첨가(進上添價).

돈 240냥 : 전관색(傳關色)의 각가(脚價).
- 매월 20냥씩 -

돈 30냥 : 전관색의 하삼삭 농형장(夏三朔農形狀) 각가 첨급. - 매월 10냥씩 더 준다. -

돈 240냥 : 관용(官用)의 치계시탄가(雉鷄柴炭價).
- 매월 20냥씩 -

돈 6냥 6전 : 진상하는 자하거가(紫河車價).
- 이 조목은 상소해서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

돈 60냥 : 진상하는 절선가 첨급(節扇價添給).

돈 75냥 : 분양마(分養馬)의 거래부비(去來浮費) 및 외양가(喂養價).- 이 조목도 상사(上司)에서 조정에 아뢰어 그 법을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 -

돈 70냥 : 통영(統營)의 전죽가(箭竹價).

돈 60냥 : 병영의 전죽가.

돈 60냥 : 수영(水營)의 궁소죽가(弓巢竹價).

돈 60냥 : 수영의 기한죽가(旗桿竹價).

돈 40냥 : 경사(京司)에 바치는 죽물(竹物). 목물(木物)의 인정(人情).

돈 50냥 : 규장각(奎章閣)의 책지벽지가(冊紙壁紙價). - 이 조목도 상소해서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

돈 45냥 4전 : 동지사(冬至使)가 요구하는 피물철물가(皮物鐵物價).

돈 12냥 : 본고 소용의 지필묵가(紙筆墨價).
- 매월 각 1냥씩 -

돈 1냥 : 본고의 등유가(燈油價).

도합 이상의 매년 응하전(應下錢) 1550냥은 절목에 의거 일괄 지출하고 하기(下記)는 없다.

돈 150냥 : 진상하는 청대죽가(靑大竹價). - 차례에 해당되는 해에만 차하하니, 이 법은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이다. -

돈 50냥 : 제주인(濟州人)의 희료(餼料)와 소안도(蘇安島)의 고자급(庫子給). - 오직 도회관(都會官)의 차례에 해당되는 해에만 차하한다. 이하 2조도 마찬가지다. -

돈 8냥 : 제주 월해 군관(濟州越海軍官)의 노비(路費).

돈 8냥 : 제주에서 진상하는 물종을 영거(領去)하는 군관의 상경노비(上京路費).

돈 50냥 : 표류선(漂流船)이 정박했을 때 지공하는 기명가(器皿價).

돈 20냥 : 순력시(巡歷時) 남례원(南禮院)의 수리가(修理價). - 오직 순력하다가 남례원에 들르는 경우에만 차하하되, 봄・가을로 모두 들르면 가을에는 10냥을 지급한다. 무릇 1년이 못되어서 다시 들르는 경우는 모두 절반만 지급한다. -

돈 40냥 : 순력시 원참 지대가 첨급(院站支待價添給).

돈 120냥 : 순력시 포진 장악가(鋪陳帳握價). - 봄・가을 모두 들르는 경우 가을에는 60냥만 지급한다. -

돈 30냥 : 별사(別使)가 요구하는 피물등가(皮物等價).

돈 50냥 : 이조당참가(吏曹堂參價). - 오직 수령이 갈리어 돌아갈 때만 차하한다. 이 조목은 마땅히 수령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

돈 60냥 : 아사수리가(衙舍修理價). - 새로 수령이 도임할 때만 차하한다. -

돈 20냥 : 윤달의 치계시탄가.

돈 60냥 : 선생(先生)의 치부조(致賻條).

돈 20냥 : 순영(巡營)에서 별복정(別卜定)한 향심 20두가(香蕈二十斗價).

돈 1냥 : 윤달의 본고 지필묵가.

위에 나열한 여러 조목들은 용도에 따라서 기록하고, 회계가 있어야 한다.

1년 동안 배정해 쓰고 남는 돈이 있거든 고을 안에서 가장 부유한 백성을 골라 주었다가 가하(加下)가 있는 해를 당하면 가져다 쓰며, 혹 재감(災減)이 있는 해를 만나 민결(民結)이 축소되면 전곡을 모두 더 징수하지 말고 이 돈을 가져다 쓸 것이다.

이것의 이자조는 100냥마다 1년 이자는 20냥으로 계산하여 5년 후면 100냥을 거두어서 - 금년의 이자를 다음 해 본전으로 계산하지 말고, 다만 첫 해의 본전에다 그해 그해의 이자를 계산한다. - 그것을 나누어 다른 사람에게 준다. - 대체로 백성들에게 돈을 줄 경우 한 사람이 100냥을 초과하지 않게 한다"[1].

이상과 같이 다산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 유배시절에 백성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민고의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다른 고을들의 민고절목을 참고로 하여 금산현의 민고절목 초안을 작성하여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여기서 금산현은 오늘날의 해남지역으로 보는 연구자도 있고[4], 가상의 군현으로 보는 연구자도 있다[5]. 금산현이 정확히 어디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산 정약용이 제시한 이러한 금산현 민고절목은 시대적인 배경과 유배된 전직 관리가 제시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도 그 시행의 결실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산 정약용의 민고 개혁 의지야 말로 백성들의 삶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세법개혁의 핵심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조선시대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은 세법을 개혁하려는 의지 또한 남달랐다. 조선의 세법에 대한 폐단의 원인과 개선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유배지였던 전라도 강진의 조세자료를 조사하기도 하였는데 그 조사자료에는 기본 전세 외에 법전에 기록되거나 기록되지 않은 부가세 성격의 조세가 수없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세 외에 더 부가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조세는 백성들의 부담을 당연히 더 가중시키는 것이다. 하물며 법전에 나와 있지도 않는 조세를 수시로 납부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뇌물까지도 조세로 둔갑시켜 납부하게 되는 지경이었으니 백성들이 기본 전세 외에 납부한 각종 부가세의 부담은 그들의 고단한 삶의 고통을 더 가중시킨 것이다. 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수많은 사회개혁책 중에서 세법의 부분은 바로 기본 전세 외에도 갖가지 명목으로 납부하게 되는 부가세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세법에 대한 개혁책 제시를 기초로 하여 조선시대 백성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각종 부가세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1]와 「경세유표」[6]를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시 백성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에는 기본 전세 외에 지방재정기구였던 민고에서 징수한 각종 부가세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가세들을 연일현감 정만석이 올린 상소내용과 정약용의 전라도 강진 유배시절 조사한 조세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금산현 민고절목을 검토하였다. 금산현 민고절목을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전세 외에도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던 민고의 폐단을 개혁하려는 다산 정약용의 참된 실학자다운 면모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다.

References

[1] “Mokminsimso”, Institute for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2]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3]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4] Yang-Seop Song, “Tasan Cheong Yagyong's Perception of the Local governor and Direction of Local governing Based on Mongminsimseo”, Dasanhak 28, pp.65-106, (2016).
[5] Snang-Wuk Jeon, “Jeong Yak-yong's Operational improvements of Civil Fund recorded in the Mongmin simseo” Dasanhak 31, pp.289-330, (2017).
[6] “Kyoungseyupyo”. Institute for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